

# 나라별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

## Standard of Imports and Exports in Wood Packing Material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자료제공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주최하고 국립식물검역소,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한국파렛트협회가 주관하는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가 지난 달 6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에서는 △ 우리나라 수입목재 포장재의 검역요건 △ 목재포장재 수출입절차 및 주의사항 △ 목재포장재 대체용기를 소개했다. 본 고에서는 나라별 수출·입 화물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 기준을 살펴본다.

- 편집자주 -

### 1. 목재포장재 검역 실시배경

목재포장재는 나무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전재, 드럼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실례로 중국에서 수입된 목재포장재를 통해 미국 북부지역으로 '유리알락하늘소'가 전파되었으며 미국에선 동 해충의 박멸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포장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화물의 포장재

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2002년엔 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각 나라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 2. 목재포장재 검역관련 국제기준

1)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 (ISPM No.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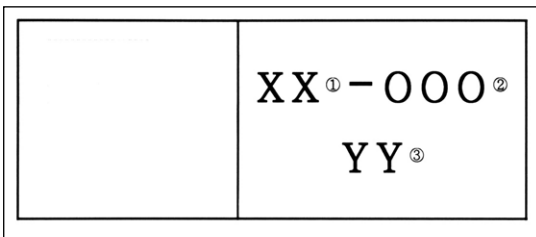
2002년 3월에 개최된 제4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검역과 관련된 내용 '용어 정의, 소독처리방법, 증명방법 등'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 1] 메틸브로마이드 (MB) 훈증

온도	투약량 (g/m <sup>3</sup> )	최저농도(g/m <sup>3</sup> )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 최저온도가 10℃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함

[그림 1] 소독처리마크



- ① XX : ISO 2자리 국가코드 (예시: 한국= KR, 미국= US, 일본=JP)
- ② 000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 ③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예: HT, MB)

2)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① 열처리

-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해야 함
- 고열건조(KD, Kiln Drying), 화학적 방부제 가압 침지(CPI,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또는 기타 처리 방법도 HT 처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될 수 있음

3. 외국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

1) 중국

- ① 검역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http://www.aqsiq.gov.cn/>)

- ② 대상 품목 : 침엽수 목재포장재

- ③ 관련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④ 요건 : 목재중심부 온도 56℃에서 30분간 이상 열처리 또는 중국의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소독

- ⑤ 증명방법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첨부

- ⑥ 비침엽수 목재포장재(활엽수, 합판 등) 또는 비목재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 수출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사용증명서' 또는 '목재포장재 무사용 증명서' )를 발행하여 중국 측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중국 식물검역당국에 제출

- 송장(Invoice) 또는/그리고 선하증권(B/L)에 동 사항을 기재

- ⑦ 불이행시 조치 : 포장재를 제거하여 폐기,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화물과 함께 폐기 또는 반송

2) 미국

① 검역기관 : 동식물검역소(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http://www.aphis.usda.gov/>)

- ②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사용 증명서 작성 예시〉

Declaration of non-coniferous wood packing material
To the Service of China Entry &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It is declared that all wood packing materials in this shipment (화물품목) commodity (수량) quantity/weight are made of non-coniferous trees.
Name of Export Company:(Stamp or Signature of Director)
Date:

〈목재포장재 무사용 증명서 작성 예시〉

Declaration of non-wood packing material
To the Service of China Entry &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It is declared that all this shipment (화물품목) commodity (수량) quantity/weight does not contain wood packing materials
Name of Export Company : (Stamp or Signature of Director)
Date :

③ 요건

〈〈 2005. 9. 16. 이전(미국 도착일 기준) 〉〉

- 수피가 없는 경우 : 도착지 검사 (수출 전 소독처리 불필요)
- 수피가 있는 경우 또는 수피가 없으나 규제물품에 해당하는 목재를 수출할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한 후 소독증명서 첨부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71.1℃에서 75분간
  - 훈증 : 21℃ 이상에서 약량 48g/m<sup>3</sup> 16시간, 4.5~20.6℃에서 약량 80g/m<sup>3</sup> 16시간
  - 화학적 방부처리
  - 규제물품 : 미가공 되었거나, 단순히 가공된

다음의 물품

- 통나무(logs) · 제재목(lumber) · 나무 전체
- 자른 나무 또는 단지 잎, 꽃, 과일, 눈(bud) 또는 종자 이외의 나무의 어떤 부분 · 껍질 · 코르크 · 줄대(lath) · 장작(hog fuel) · 톱밥 · 페인트칠된 미가공 목제품 · 대패밥(excelsior) · 우드칩 · 목재 덮개(wood mulch) · 깎아낸 부스러기(wood shavings) · 긴 말뚝(pickets) · 말뚝(stakes) · 지붕널(shingles) · 고형목재포장재료(solid wood packing material) · 부식토(humus) · 배합토(compost) · 부엽토(腐葉土)(litter)

[표 2] 미국, 캐나다 MB훈증(상압)

온도	투약량 (g/m <sup>3</sup> )	최저농도(g/m <sup>3</sup> )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5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표 2] 호주(MB) 훈증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21℃ 이상	48g/m <sup>3</sup>	24시간
16℃ 이상	56g/m <sup>3</sup>	"
11℃ 이상	64g/m <sup>3</sup>	"

※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됨

[표 3] 호주 상압에서의 훈증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21℃ 이상	48g/m <sup>3</sup>	24시간
16℃~20℃	56g/m <sup>3</sup>	"
11℃~15℃	64g/m <sup>3</sup>	"
5℃~10℃	72g/m <sup>3</sup>	"
4℃ 이상	80g/m <sup>3</sup>	"

※ 10℃ 이하에서는 가온장치를 가동하여 소독

[표 4] 진공에서의 훈증(호주)

온도	투약량	처리시간
21℃ 이상	64g/m <sup>3</sup>	4시간
4℃~20℃	64g/m <sup>3</sup>	5시간

[표 5] 호주 두께에 따른 처리시간

목재 두께(mm)	처리시간(시간)	비고
0~25	4	
26~50	6	
51~75	8	
76~100	10	
101~150	14	
151~200	18	
두께 미확인/미기재	AQIS측 검사 필요	
201 이상	18시간 이상 처리	AQIS측 수입허가서 필요

《2005. 9. 16. 및 그 이후(미국 도착일 기준)》

-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 표시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MB훈증(상압)

3) 캐나다

① 검역기관 :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http://www.inspection.gc.ca/>)

②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③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 표시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MB훈증(상압)

④ 요건에 맞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 2005. 9. 16. 이전 : 상대국에 통보하고 캐나다의 규제병해충 발견 시 조치

- 2005. 9. 16. 이후 : 화물과 함께 무조건 반송

※ 2005. 9. 16. 이전까지는 MB훈증 소독처리하고 동 처리 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인정함

4) 호주

① 검역기관 : 식물검역검사소(AQIS, 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http://www.affa.gov.au/>)

②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목재포장재(뉴질랜드 제외)

③ 요건

- 수피(樹皮, bark)가 없어야 함
- 호주는 아래의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

므로 두 가지 중 1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또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거나 식물위생 증명서를 첨부(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 수출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MB훈증 (목재 두께가 200mm를 초과해서는 안됨), 단 최저온도가 10℃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적 전 21일 이내에 처리하고 동 사실을 기재한 소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MB훈증(목재 두께가 200mm를 초과해서는 안됨)([표 3], [표 4]참조)

- Sulphuryl fluoride : 21℃ 온도에서 64g/m<sup>3</sup> 약량으로 16시간

- 열처리 또는 고열건조(KD, Kiln Drying)

열처리 시설내 건구온도 및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처리시간 동안 건구온도는 74℃ 이상, 습구온도와의 차이는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게 하여 처리시간 동안 목재중심부 온도가 74℃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리시간은 목재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 처리 후 목재흡수율이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합판류의 가공목재(manufactured wood)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선적 전 3개월 이내에 새로 제작되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호주에서의 검사와 소독이 면제된다.

이 경우 아래의 문구가 포함된 증명서(수출자가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예시)

The (name of the panel product) packing/product in this consignment was manufactured in (name of country)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and has not been pre-used.

⑤ 중 질 도 섬유 판 (Medium density fiberboard: 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Oriented strand board: OSB), 섬유판 (Mesonite) 등의 가공목재(reconstituted wood)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별도의 증명도 필요 없이 그대로 수출하시면 됩니다.

5) 뉴질랜드

① 대상품목 : 가공처리 안된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수피가 없어야 함

- 뉴질랜드는 아래 두 가지 중 1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국제기준 ISPM No.15의 기준에 따라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적 전 21일 이내에 소독하고 식물위생증명서·소독증명서에 처리사실 기재

- MB 또는 Sulphuryl fluoride 훈증: 온도 10℃ 이상에서 약량 80g/m<sup>3</sup>으로 24시간

- 인화수소 훈증 : 온도 10℃~30℃에서 약량 1.41g/m<sup>3</sup>으로 72시간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최소 70℃에서 4시간 이상 처리

- 화학적 방부처리

6) 유럽연합 (EU,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 MB훈증(상압)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

7) 인도

인도 농림부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Agriculture)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MB훈증: 21℃에서 48g/m<sup>3</sup>으로 16시간 처리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 고열건조(Kiln Drying: KD) 처리

- 화학적 방부제 가압처리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CPI)

③ 증명방법: 소독처리마크 표시 또는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④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 도착지에서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소독

처리 한 후 통관

⑤ 합판, 베니어, 파티클보드 등 접착제, 열, 압력 및 이러한 방법을 혼용하여 생산된 가공품으로만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⑥ veneer peeler cores, 톱밥, 목모(wood wool), 대패밥(shavings) 및 두께 6mm 이하의 얇은 나무조각은 인도의 식물방역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⑦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이 아닌 여행객의 수하물 포장에 사용된 목재 포장재는 적용 제외

8) 브라질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제외품목 : 열, 압착 등의 가공을 거친 목재포장재

③ 요건

- 수피(樹皮, bark) 제거 및 해충 및 해충 가해 흔적이 없어야 함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 MB훈증(상압)

④ 증명방법: 소독처리마크 표시

⑤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의 처분: 소각 또는 폐기 · 반송

9) 멕시코

① 대상 : 가공되지 않은 목재포장재

② 제외품목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열 · 압력 · 접착제로 제작된 베

니어등 가공된 목재포장재

③ 요건

- 수피(樹皮, bark)제거
- 해충 및 해충 가해흔적이 없어야 함
- 국제기준(ISPM No.15)대로 열처리 또는

MB혼증 실시

④ 증명방법 :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표지

⑤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조치

-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경우 : 소독, 폐기 또는 반송
- 살아있는 해충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 검사 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10) 아르헨티나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활엽수 및 침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 MB혼증(상압)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지

11) 콜롬비아

① 대상품목 : 콜롬비아로 수입되거나 콜롬비아를 경유하는 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 또는 기타 처리방법이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 혼증 : 단, 최저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혼증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지

④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 목재포장재 폐기
- 화학 처리
- 목재포장재 재수출
- 목재포장재 통관 보류
- 단, 소독처리 비용 또는 기타 조치에 대한 비용은 수입업자 부담

12) 코스타리카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칩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 또는 기타 처리방법이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혼증

최소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혼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최소 노출시간은 24시간

③ 증명방법 : 소독사항(약제명·약량·노출시간 등)을 기재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④ 면제대상 물품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와 같은 목재산물로 전부 제작되어 있고 아교,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한 목재포장재
- 목재심재부, 톱밥, wood wool, 대패밥(최소

6mm), 생목재를 얇게 조각낸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

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 반송, 소독 또는 폐기

### 13) 칠레

① 대상품목 : 칠레로 수입 또는 칠레를 경유하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중에서, 두께 5mm 이상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수피가 없어야 하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단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혼증 : 최저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혼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

④ 면제품목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와 같이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여 제작된 목재포장재

- 양조 목적의 통나무와 배럴(통나무통)

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조치 : 소각 또는 소독 처리:

- 목재포장재에 마크가 없는 경우

- 목재포장재에 수피가 있는 경우

- 목재포장재에서 해충 또는 해충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

### 14) 엘살바도르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목재포장재

② 요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한 후 소독처리마크 표시

-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단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혼증 : 최저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혼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③ 소독처리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처분 : 소각 또는 혼증, 반송 조치

### 15) 러시아

① 대상품목 :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 가까운 지소나 출장소에 수출식품 검사신청하여 검사를 받고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

③ 불이행시 조치

-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

- MB혼증 또는 고열처리

- 반입금지

### 16) 필리핀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요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단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혼증 : 최저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혼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



17) 터키

① 대상품목: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시행일: 2006. 1. 1.부터

③ 요건

- 수피가 없어야 함

-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단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훈증 : 최저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④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

18) 페루

① 대상품목 : 페루를 경유하거나 페루로 수입 되는 화물의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 열처리: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훈증 : 최소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

④ 제외 물품

- 두께 6mm 미만의 목재포장재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등과 같이 접착제·열·압력 등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을 사멸시킨 것

- 베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 톱밥, 목

모, 대패밥, 생목재를 얇게 조각 낸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 등 그 성질상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이 없는 것

19) 남아프리카공화국

① 대상품목: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 열처리: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단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훈증 : 최저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③ 증명방법: 소독처리마크 표시

④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의 조치 : 반송

20) 나이지리아

① 대상품목 :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② 요건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 열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단 건열처리(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CPI)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

- MB훈증 : 최소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

③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 또는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④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의 조치 : 통관보류, 폐기, 소독, 반송

[표 6]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 요약

구 분	〈소독방법〉 1가지 선택		〈증명방법〉 1가지 선택		
	열처리	MB훈증	소독처리마크	식물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중 국	○			○	
미 국 (도착일 9.16. 이후)	○	○	○		
캐나다	○	○	○		
호 주	○	○	○	○	○
인 도	○	○	○	○	
유럽연합	○	○	○		
뉴질랜드	○	○	○	○	○
브라질	○	○	○		
콜롬비아	○	○	○		
코스타리카	○	○		○	
칠 레	○	○	○		
엘살바도르	○	○	○		
필리핀	○	○	○		
터 키 (2006. 1. 1.시행)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나이지리아	○	○	○	○	
아르헨티나	○	○	○		
페루	○	○	○		
러시아				○	
노르웨이				○	
루마니아				○	

※ 식물위생증명서: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급

※ 소독증명서: 소독처리업체에서 발급

21) 노르웨이

- ① 검역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
- ② 요건 :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목재포장재는 수피(樹皮, bark)가 없고, 하늘소류(Monochamus spp.)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목재 함수율이 20%이하여야 함
- ③ 노르웨이가 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라

목재포장재 검역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입수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므로 파악 되는대로 식물검역소 홈페이지에 추가 게재할 예정임

22) 루마니아

- ① 검역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측백나무속제외)

② 요건 :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목재포장재는 수피(樹皮, bark)가 없고, 하늘소류(Monochamus spp.)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목재 함수율이 20%이하여야 함

23) 스위스

① 검역대상: 미가공목재로 만든 포장재

② 소독 내용 : ISPM No.15 에 따라 목재의 중심온도가 56℃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MB 혼증

③ 소독처리마크표시

- ISPM No.15의 부속서Ⅱ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 마크표시는 명료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함

- 수피가 붙어있지 않아야 됨(단, 2006. 3. 1 일까지는 적용안함)

④ 실시 시기 : 2005. 4. 1일부터 실시

24) 베네주엘라

① 검역대상: 화물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목재포장재

② 소독 내용 : ISPM No.15의 부속서Ⅰ에 근거한 검역조치 실시 (목재의 중심온도가 56℃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MB혼증)

③ 소독처리마크표시 : ISPM No. 15 의 부속서Ⅱ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④ 수입허가절차 : 항구, 공항 및 국경검문소의 검사관이 소독처리마크표시 확인 및 검역병해충 검사

⑤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조치 : 검사 결과 요건에 부합하지 안하을 경우 입국 거부, 소독 또는 폐기

⑥ 실시 시기 : 2005. 5. 2일부터 실시

#### 4. 국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

1) 대상 :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의 활엽수 및 침엽수 목재포장재

2) 제외품목

①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②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3) 시행일: 2005. 6. 1.(선적일 기준)

4) 요건 :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소독

①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② MB혼증

- 소나무재선충 미부포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16시간 혼증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잎갈나무속개잎갈나무속 목재포장재: 24시간 혼증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갈, 베트남(소나무속)

5) 증명방법: 소독처리마크 표시

6)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처분

① 소독 :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② 폐기 또는 반송 :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가 폐기 또는 반송을 원할 경우,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화물과 포장재가 분리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 ☐